

第304回國會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錄 第 1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12月26日(月)

場 所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 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
13. 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안
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안
4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지방대학육성법안
48.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창원과학기술원법안
60. 부산과학기술원법안
61.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
62.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법안
64. 기장 첨단 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65.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과학연구단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70.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
7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4. 현안보고
 - 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 나. 교장공모제 관련 법령개선 추진
 - 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審査된案件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 · 조전혁 · 김세연 · 조원진 · 서상기 · 정진섭 · 정두언 · 김선동 · 배은희 · 권영진 · 박영아 · 임해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32) 7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김호연 · 김영록 · 오제세 · 김성순 · 전해숙 · 유성엽 · 김영진 · 김성곤 · 안민석 의원 발의) 7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정권 · 이진삼 · 권선택 · 이상민 · 김창수 · 김용구 · 정의화 · 김낙성 · 김을동 의원 발의) 7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이용희 · 유성엽 · 이한성 · 권택기 · 황영철 · 박영아 · 임해규 · 권영진 · 박민식 의원 발의) 7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 · 서상기 · 조전혁 · 김선동 · 권영진 · 유정현 · 김세연 · 구상찬 · 주광덕 · 이철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10) 7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정두언 · 김세연 · 박보환 · 조전혁 · 조진래 · 원희목 · 이종혁 · 배은희 · 권영진 의원 발의) 7
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송민순 · 강창일 · 박은수 · 추미애 · 원혜영 · 이미경 · 김재균 · 김유정 · 백재현 의원 발의) 7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유선호 · 강창일 · 유성엽 · 박주선 · 백재현 · 김진표 · 김영록 · 조정태 · 오제세 의원 발의) 7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 · 김세연 · 김정권 · 이윤성 · 신성범 · 정진섭 · 정해걸 · 조진래 · 김선동 · 허원제 의원 발의) 7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김영진 · 최종원 · 양승조 · 김상희 · 권영길 · 김춘진 · 유성엽 · 서상기 · 백재현 · 강기정 · 오제세 의원 발의) 7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이명수 · 김을동 · 안규백 · 이사철 · 여상규 · 박준선 · 원유철 · 박주선 · 김학송 의원 발의) 7
12.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8
13. 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강명순 · 고승덕 · 권성동 · 권영진 · 김광림 · 김선동 · 김정권 · 나성린 · 신지호 · 원희목 · 유승민 · 이명규 · 이은재 · 이진복 · 임동규 · 정진석 · 조원진 · 홍사덕 · 황영철 의원 발의) 8
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희 의원 대표발의)(최경희 · 원희룡 · 윤석용 · 이종구 · 이윤성 · 장제원 · 임동규 · 신영수 · 유재중 · 홍준표 · 이한성 · 원희목 · 강용석 의원 발의) 8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 · 김재균 · 유선호 · 박주선 · 박은수 · 전현희 · 양승조 · 강봉균 · 추미애 · 김진표 · 김효석 · 신건 · 장병완 · 강기정 의원 발의) 8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김우남 · 김재균 · 이미경 · 김동철 · 안민석 · 변재일 · 최규식 · 이석현 · 양승조 · 김유정 · 최철국 · 백원우 · 백재현 · 강창일 · 서갑원 의원 발의) 8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 · 박은수 · 최철국 · 유선호 · 양승조 · 안규백 · 조정식 · 전현희 · 노영민 · 장세환 · 최규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8632) .. 8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 · 박은수 · 양승조 · 김영록 · 장세환 · 최규성 · 전현희 · 최철국 · 유선호 · 김재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8805) 8
19.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 · 강기정 · 강창일 · 고승덕 · 김동철 · 김부겸 · 김재균 · 김재윤 · 김태원 · 문학진 · 박주선 · 백재현 · 신낙균 · 안규백 · 양승조 · 우제창 · 원혜영 · 유선호 · 유성엽 · 유정현 · 이낙연 · 이미경 · 이석현 · 이성현 · 이용섭 · 이종걸 · 이찬열 · 이춘석 · 장세환 · 전병헌 · 전해숙 · 정장선 · 조배숙 · 조영택 · 조정식 · 주승용 · 최규식 · 최철국 의원 발의) 8
20.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유정현 · 이한성 · 김태원 · 김정

	훈 · 이인기 · 신상진 · 정갑윤 · 홍일표 · 이용경 · 정해걸 의원 발의)	8
21.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박은수 · 장세환 · 양승조 · 전현희 · 김유정 · 안민석 · 김영진 · 김부겸 · 백재현 · 강기갑 · 이정희 · 홍희덕 · 권영길 · 유성엽 · 유선호 · 최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05)	8
22.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조전혁 · 강석호 · 권영진 · 김영선 · 김영우 · 김선동 · 김세연 · 김을동 · 김재경 · 김태원 · 김효재 · 박보환 · 박준선 · 배은희 · 서상기 · 손범규 · 신지호 · 안효대 · 원희룡 · 윤상현 · 윤석용 · 이두아 · 이종혁 · 이철우 · 임동규 · 정해걸 · 조문환 · 조원진 · 차명진 · 최경환 의원 발의)	8
23.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김부겸 · 권경석 · 한기호 · 이운성 · 황영철 · 송민순 · 송훈석 · 변웅전 · 정해걸 의원 발의)	8
2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 · 김학용 · 성윤환 · 김성수 · 서상기 · 김선동 · 이범래 · 허태열 · 배영식 · 정영희 · 심대평 · 유정현 · 최경희 · 원희목 · 이춘식 · 박상은 · 강길부 · 조진래 · 정해걸 · 김호연 · 윤영 · 고흥길 · 김소남 · 최연희 · 이인기 · 장광근 · 백성운 · 김효석 · 김성곤 · 오제세 · 홍재형 · 유일호 · 서병수 · 김성조 · 임동규 · 최경환 · 박대해 · 김태원 · 김옥이 · 이정현 · 김동성 · 진영 · 김성동 · 이두아 · 이정선 · 홍사덕 · 김재경 · 이종혁 · 김태환 · 김장수 · 유재중 · 홍준표 · 송광호 · 이진복 · 김효재 · 김용태 · 정옥임 · 나경원 · 차명진 · 박보환 · 김충조 · 최인기 · 양승조 · 김우남 · 이미경 · 김정훈 · 윤석용 · 이상권 · 윤상현 · 허천 · 김형오 · 이명규 · 정진섭 · 김세연 · 김태호 · 정태근 · 강승규 · 여상규 · 나성린 · 이한구 · 이성현 · 이성남 · 강석호 · 이화수 · 박준선 · 이애주 · 허원제 · 신성범 · 전여옥 · 박진 · 박병석 · 박영아 · 김성식 · 정갑윤 · 정수성 · 박순자 · 정하균 · 노철래 · 김정 · 박선숙 · 이종구 · 김학송 · 이용희 · 장병완 · 남경필 · 장윤석 · 권경석 · 정양석 · 이용섭 · 김혜성 · 조배숙 의원 발의)	8
25.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백원우 · 김재균 · 조영택 · 조정식 · 양승조 · 노영민 · 최규성 · 박은수 · 강창일 · 이춘식 · 김성곤 의원 발의)	8
26.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 · 권영진 · 김무성 · 김세연 · 박보환 · 서상기 · 유성엽 · 이상민 · 임해규 · 조전혁 · 김소남 · 김충환 · 김태환 · 나경원 · 나성린 · 성윤환 · 손숙미 · 신상진 · 안형환 · 유기준 · 윤석용 · 윤진식 · 이명규 · 이정선 · 이한성 · 임영호 · 정갑윤 · 정양석 · 정의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4)	9
27.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이명수 · 유성엽 · 이한성 · 이병석 · 주호영 · 박선영 · 정미경 · 박민식 · 박영아 의원 발의)	9
2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 · 김정권 · 박민식 · 조진래 · 김성곤 · 이학재 · 송훈석 · 이성현 · 박선영 · 신성범 의원 발의)	9
2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이성현 · 박보환 · 고승덕 · 조전혁 · 김세연 · 정해걸 · 김을동 · 김성조 · 정희수 의원 발의)	9
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주광덕 · 김호연 · 김성태 · 홍영표 · 유정현 · 장윤석 · 강명순 · 원희목 · 안형환 · 이정선 의원 발의)	9
3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 · 최경희 · 이명규 · 김세연 · 서상기 · 박보환 · 김태환 · 이정선 · 박순자 · 이상민 · 김무성 · 정의화 · 나성린 · 조전혁 · 권영진 의원 발의)	9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백원우 · 김재균 · 조영택 · 조정식 · 양승조 · 노영민 · 박은수 · 강창일 · 김성곤 의원 발의)	9
3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9
3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박주선 · 이찬열 · 강용석 · 최규성 · 김성곤 · 강기정 · 주승용 · 유선호 · 서종표 · 조정식 의원 발의)	9
3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 · 김영우 · 송민순 · 이한성 · 최경희 ·	

- 강용석·박준선·배영식·김성동·정해걸·이사철 의원 발의) 9
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임영호·이명수·유성엽·류근찬·김용구·김창수·안민석·권선택·이재선 의원 발의) 9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박보환·한기호·정두언·신성범·정수성·조전혁·황영철·서상기·최구식·권택기·정갑윤 의원 발의) 9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정영희·김용구·김혜성·노철래·심대평·신성범·안민석·유정현·윤상일·이운성·임영호·조경태·허천 의원 발의) 9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조배숙·이낙연·유성엽·김성곤·김상희·김영록·김영진·최규식·이찬열 의원 발의) 9
4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9
4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양승조·김효석·강기정·최규식·유선호·백원우·박기춘·박지원·정장선 의원 발의) 9
4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9
4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황우여·권영진·윤영·신성범·조진래·김을동·송훈석·김세연·안효대 의원 발의) 9
44.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안민석·유선호·김성곤·김성순·송민순·신낙균·정해걸·이찬열·김재윤 의원 발의) 9
4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양승조·김효석·강기정·최규식·유선호·백원우·박기춘·박지원·정장선 의원 발의) 9
4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47. 지방대학육성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조경태·유성엽·양승조·강기갑·권영길·김재윤·강창일·조영택·강기정·김을동·이시중 의원 발의) 9
48.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안민석·유선호·김성곤·김성순·김유정·송민순·신낙균·정해걸·이찬열·김재윤 의원 발의) 10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이경재·김기현·김세연·서상기·박보환·김태환·이정선·이상민·김무성·임해규·정의화·나성린·조전혁·권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10) 10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최종원·권영길·김영진·안민석·천정배·김우남·유성엽·이석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44) 10
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백원우·조영택·조정식·양승조·노영민·최규성·박은수·강창일·이춘석·김성곤 의원 발의) 10
5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춘진·이종걸·오제세·이성남·백재현·김상희·유성엽·권영길·박은수 의원 발의) 10
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희 의원 대표발의)(최경희·원희룡·윤석용·이종구·이운성·장제원·임동규·신영수·유재중·홍준표·이한성·원희목·강용석 의원 발의) 10
5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강용석·이정선·김금래·송민순·심대평·권경석·김소남·이혜훈·정영희·김혜성 의원 발의) 10
5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5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5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10
5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

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10

59. 창원과학기술원법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 · 김정권 · 이주영 · 권경석 · 김장수 · 권영길 · 조진래 · 안홍준 · 김태호 · 강용석 의원 발의) 10

60. 부산과학기술원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김무성 · 허원제 · 현기환 · 유재중 · 서병수 · 유기준 · 이진복 · 이종혁 · 정의화 · 박대해 · 장제원 · 허태열 의원 발의) 10

61.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박희태 · 정의화 · 고흥길 · 이정재 · 정미경 · 조진래 · 김소남 · 김옥이 · 강석호 · 신지호 · 김무성 · 윤상현 · 유성엽 · 이해주 · 여상규 · 이범관 · 이진복 · 이두아 · 김혜성 · 권영진 · 배은희 · 정양석 · 홍준표 · 정희수 · 이춘식 · 장윤석 · 허천 · 이한성 · 이병석 · 윤석용 · 홍일표 · 권택기 · 조진형 · 주호영 · 진성호 · 유정현 · 황진하 · 서상기 · 김정권 · 조전혁 · 주광덕 · 임동규 · 서병수 · 박종근 · 김성동 · 원유철 · 나성린 · 이철우 · 유기준 · 정진섭 · 안홍준 · 백성운 · 나경원 · 최병국 · 손범규 · 이군현 · 김태환 · 이명규 · 정갑윤 · 김충환 · 강길부 · 한선교 · 이한구 · 황우여 · 김성수 · 김광림 · 조정태 · 윤영 · 정해걸 · 최구식 · 신성범 · 윤진식 · 박순자 · 박민식 · 구상찬 · 김금래 · 이정현 · 안효대 · 손숙미 · 조원진 · 허태열 · 송광호 · 전재회 · 권성동 · 이종혁 · 김태원 · 박영아 · 한기호 · 김동성 · 김태호 · 이은재 · 이상득 · 김성태 · 진영 · 이종구 · 강명순 · 이성현 · 김성조 · 정몽준 · 홍사덕 · 허원제 · 박준선 · 신상진 · 정두언 · 신영수 · 유재중 · 김을동 · 김성희 · 박보환 · 정옥임 · 조윤선 · 김형오 · 이화수 · 김선동 · 강성천 · 홍재형 · 권경석 · 유정복 · 김영우 · 전여옥 · 최규식 · 이종걸 · 신건 · 장세환 · 문학진 · 박지원 · 박기춘 · 송민순 · 장광근 · 이인기 · 이정선 · 박대해 · 장제원 · 김학용 · 이상권 · 홍정옥 · 이사철 · 정영희 · 성윤환 · 이재선 · 김창수 · 임영호 · 이진삼 · 류근찬 · 변웅전 · 김용구 · 박선영 · 노철래 · 최규성 · 최인기 · 김영환 · 서종표 · 이강래 · 송영선 · 김재경 · 이윤성 · 임해규 · 이학재 · 박진 · 김용태 · 배영식 · 이범래 · 김호연 · 원희목 · 박상은 · 안상수 의원 발의) 10

62.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안효대 · 노철래 · 김기현 · 신성범 · 배은희 · 강길부 · 최병국 · 장제원 · 이윤석 · 김무성 · 이화수 · 김소남 · 이은재 · 이사철 · 강창일 · 최구식 · 서병수 · 원유철 의원 발의) 10

63. 한국방사선의 과학기술원법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유기준 · 김세연 · 이종혁 · 강성천 · 윤석용 · 김무성 · 박민식 · 유재중 · 조정태 · 장제원 · 박대해 · 현기환 · 서병수 · 김정훈 · 정의화 · 허원제 · 권성동 · 이정선 · 김호연 · 유정현 · 이진복 · 진영 · 박준선 · 박상은 · 김옥이 · 허태열 · 김형오 · 손숙미 · 신상진 의원 발의) 11

64. 가장 첨단 방사선 의 과학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유기준 · 김세연 · 이종혁 · 강성천 · 윤석용 · 김무성 · 박민식 · 유재중 · 조정태 · 장제원 · 박대해 · 현기환 · 서병수 · 김정훈 · 정의화 · 허원제 · 권성동 · 이정선 · 김호연 · 유정현 · 이진복 · 진영 · 박준선 · 박상은 · 김옥이 · 허태열 · 김형오 · 손숙미 · 신상진 의원 발의) 11

65.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박보환 · 조전혁 · 정두언 · 조진래 · 이종혁 · 배은희 · 권영진 · 김무성 · 김세연 · 김영진 의원 발의) 11

6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백재현 · 홍영표 · 오제세 · 안민석 · 유선호 · 김성곤 · 유성엽 · 박은수 · 송훈석 · 조영택 · 이용섭 · 이용경 · 박선숙 의원 발의) 11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 · 정두언 · 조전혁 · 박보환 · 배은희 · 허원제 · 김성동 · 심재철 · 유일호 · 김세연 · 김선동 · 임해규 의원 발의) ... 11

6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김재윤 · 양승조 · 유선호 · 이종걸 · 이춘식 · 전혜숙 · 정장선 · 조영택 · 주승용 · 최종원 의원 발의) ... 11

69. 과학연구단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 · 유성엽 · 김학송 · 안민석 · 김영진 · 홍희덕 · 강기갑 · 광정숙 · 이정희 · 金先東 · 권경석 의원 발의) 11

70.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정부 제출) 11

7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 · 이용섭 · 강성

중·김재균·강기정·김동철·박주선·강창일·이낙연·장병완·이석현·유선호 의원 발의) ……	11
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1
7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1
74. 현안보고 ……	13
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나. 교장공모제 관련 법령개선 추진	
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변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변재일 지금 24건의 법률안이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법안을 처리해도 계속 개정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법안 처리에 좀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내일 개의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법률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상정 법안 71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처리한 다음에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직접 회부 법률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양 간사와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조전혁·김세연·조원진·서상기·정진섭·정두언·김선동·배은희·권영진·박영아·임해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32)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호연·김영록·오제세·김성순·전혜숙·유성엽·김영진·김

성곤·안민석 의원 발의)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정권·이진삼·권선택·이상민·김창수·김용구·정의화·김낙성·김을동 의원 발의)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이용희·유성엽·이한성·권택기·황영철·박영아·임해규·권영진·박민식 의원 발의)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조전혁·김선동·권영진·유정현·김세연·구상찬·주광덕·이철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10)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언·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원희목·이종혁·배은희·권영진 의원 발의)
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송민순·강창일·박은수·추미애·원혜영·이미경·김재균·김유정·백재현 의원 발의)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유선호·강창일·유성엽·박주선·백재현·김진표·김영록·조경태·오제세 의원 발의)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김세연·김정권·이윤성·신성범·정진섭·정해결·조진래·김선동·허원제 의원 발의)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영진·최종원·양승조·김상희·권영길·김춘진·유성엽·서상기·백재현·강기정·오제세 의원 발의)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이명수·김을동·안규백·이사철·여상규·박준선·원유철·박주선·김학송 의원 발의)

12.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3. **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강명순 · 고승덕 · 권성동 · 권영진 · 김광립 · 김선동 · 김정권 · 나성린 · 신지호 · 원희목 · 유승민 · 이명규 · 이은재 · 이진복 · 임동규 · 정진석 · 조원진 · 홍사덕 · 황영철 의원 발의)
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희 의원 대표발의)(최경희 · 원희룡 · 윤석용 · 이종구 · 이윤성 · 장제원 · 임동규 · 신영수 · 유재중 · 홍준표 · 이한성 · 원희목 · 강용석 의원 발의)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 · 김재균 · 유선호 · 박주선 · 박은수 · 전현희 · 양승조 · 강봉균 · 추미애 · 김진표 · 김효석 · 신건 · 장병완 · 강기정 의원 발의)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김우남 · 김재균 · 이미경 · 김동철 · 안민석 · 변재일 · 최규식 · 이석현 · 양승조 · 김유정 · 최철국 · 백원우 · 백재현 · 강창일 · 서갑원 의원 발의)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 · 박은수 · 최철국 · 유선호 · 양승조 · 안규백 · 조정식 · 전현희 · 노영민 · 장세환 · 최규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8632)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 · 박은수 · 양승조 · 김영록 · 장세환 · 최규성 · 전현희 · 최철국 · 유선호 · 김재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8805)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 · 강기정 · 강창일 · 고승덕 · 김동철 · 김부겸 · 김재균 · 김재윤 · 김태원 · 문학진 · 박주선 · 백재현 · 신낙균 · 안규백 · 양승조 · 우제창 · 원혜영 · 유선호 · 유성엽 · 유정현 · 이낙연 · 이미경 · 이석현 · 이성현 · 이용섭 · 이종걸 · 이찬열 · 이춘석 · 장세환 · 전병헌 · 전해숙 · 정장선 · 조배숙 · 조영택 · 조정식 · 주승용 · 최규식 · 최철국 의원 발의)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유정현 · 이한성 · 김태원 · 김정훈 · 이인기 · 신상진 · 정갑윤 · 홍일표 · 이용경 · 정해걸 의원 발의)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박은수 · 장세환 · 양승조 · 전현희 · 김유정 · 안민석 · 김영진 · 김부겸 · 백재현 · 강기갑 · 이정희 · 홍희덕 · 권영길 · 유성엽 · 유선호 · 최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05)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조전혁 · 강석호 · 권영진 · 김영선 · 김영우 · 김선동 · 김세연 · 김을동 · 김재경 · 김태원 · 김효재 · 박보환 · 박준선 · 배은희 · 서상기 · 손범규 · 신지호 · 안효대 · 원희룡 · 윤상현 · 윤석용 · 이두아 · 이종혁 · 이철우 · 임동규 · 정해걸 · 조문환 · 조원진 · 차명진 · 최경환 의원 발의)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김부겸 · 권경석 · 한기호 · 이윤성 · 황영철 · 송민순 · 송훈석 · 변웅전 · 정해걸 의원 발의)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립 의원 대표발의)(김광립 · 김학용 · 성윤환 · 김성수 · 서상기 · 김선동 · 이범래 · 허태열 · 배영식 · 정영희 · 심대평 · 유정현 · 최경희 · 원희목 · 이춘식 · 박상은 · 강길부 · 조진래 · 정해걸 · 김호연 · 윤영 · 고흥길 · 김소남 · 최연희 · 이인기 · 장광근 · 백성운 · 김효석 · 김성곤 · 오제세 · 홍재형 · 유일호 · 서병수 · 김성조 · 임동규 · 최경환 · 박대해 · 김태원 · 김욱이 · 이정현 · 김동성 · 진영 · 김성동 · 이두아 · 이정선 · 홍사덕 · 김재경 · 이종혁 · 김태환 · 김장수 · 유재중 · 홍준표 · 송광호 · 이진복 · 김효재 · 김용태 · 정옥임 · 나경원 · 차명진 · 박보환 · 김충조 · 최인기 · 양승조 · 김우남 · 이미경 · 김정훈 · 윤석용 · 이상권 · 윤상현 · 허천 · 김형오 · 이명규 · 정진섭 · 김세연 · 김태호 · 정태근 · 강승규 · 여상규 · 나성린 · 이한구 · 이성현 · 이성남 · 강석호 · 이화수 · 박준선 · 이애주 · 허원제 · 신성범 · 전여옥 · 박진 · 박병석 · 박영아 · 김성식 · 정갑윤 · 정수성 · 박순자 · 정하균 · 노철래 · 김정 · 박선숙 · 이종구 · 김학송 · 이용희 · 장병완 · 남경필 · 장윤석 · 권경석 · 정양식 · 이용섭 · 김혜성 · 조배숙 의원 발의)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백원우 · 김재균 · 조영택 · 조정식 · 양승조 · 노영민 · 최규성 · 박은수 · 강창일 · 이춘석 · 김성곤 의원 발의)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권영진·김무성·김세연·박보환·서상기·유성엽·이상민·임해규·조전혁·김소남·김중환·김태환·나경원·나성린·성윤환·손숙미·신상진·안형환·유기준·윤석용·윤진식·이명규·이정선·이한성·임영호·정갑윤·정양석·정의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4)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이명수·유성엽·이한성·이병석·주호영·박선영·정미경·박민식·박영아 의원 발의)
2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김정권·박민식·조진래·김성곤·이학재·송훈석·이성현·박선영·신성범 의원 발의)
2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이성현·박보환·고승덕·조전혁·김세연·정해결·김을동·김성조·정희수 의원 발의)
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주광덕·김호연·김성태·홍영표·유정현·장윤석·강명순·원희목·안형환·이정선 의원 발의)
3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최경희·이명규·김세연·서상기·박보환·김태환·이정선·박순자·이상민·김무성·정의화·나성린·조전혁·권영진 의원 발의)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백원우·김재균·조영택·조정식·양승조·노영민·박은수·강창일·김성곤 의원 발의)
3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3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박주선·이찬열·강용석·최규성·김성곤·강기정·주승용·유선호·서종표·조정식 의원 발의)
3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김영우·송민순·이한성·최경희·강용석·박준선·배영식·김성동·정해결·이사철 의원 발의)
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임영호·이명수·유성엽·류근찬·김용구·김창수·안민석·권선택·이재선 의원 발의)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박보환·한기호·정두언·신성범·정수성·조전혁·황영철·서상기·최구식·권택기·정갑윤 의원 발의)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정영희·김용구·김혜성·노철래·심대평·신성범·안민석·유정현·윤상일·이윤성·임영호·조정대·허천 의원 발의)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조배숙·이낙연·유성엽·김성곤·김상희·김영록·김영진·최규식·이찬열 의원 발의)
4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4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양승조·김효석·강기정·최규식·유선호·백원우·박기춘·박지원·정장선 의원 발의)
4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4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황우여·권영진·윤영·신성범·조진래·김을동·송훈석·김세연·안호대 의원 발의)
44.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안민석·유선호·김성곤·김성순·송민순·신낙균·정해결·이찬열·김재윤 의원 발의)
4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양승조·김효석·강기정·최규식·유선호·백원우·박기춘·박지원·정장선 의원 발의)
4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지방대학육성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조정대·유성엽·양승조·강기갑·권영길·김재윤·강창일·조영택·강기정·김을동·이시중 의원 발의)

48.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김춘진·안민석·유선호·김성곤·김성순·김유정·송민순·신낙균·정해걸·이찬열·김재윤 의원 발의)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이경제·김기현·김세연·서상기·박보환·김태환·이정선·이상민·김무성·임해규·정의화·나성린·조전혁·권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10)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최종원·권영길·김영진·안민석·천정배·김우남·유성엽·이석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44)
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백원우·조영택·조정식·양승조·노영민·최규성·박은수·강창일·이춘석·김성곤 의원 발의)
5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춘진·이종걸·오제세·이성남·백재현·김상희·유성엽·권영길·박은수 의원 발의)
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희 의원 대표발의)(최경희·원희룡·윤석용·이종구·이윤성·장제원·임동규·신영수·유재중·홍준표·이한성·원희목·강용석 의원 발의)
5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강용석·이정선·김금래·송민순·심대평·권경석·김소남·이혜훈·정영희·김혜성 의원 발의)
5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5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59. **창원과학기술원법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김정권·이주영·권경석·김장수·권영길·조진래·안홍준·김태호·강용석 의원 발의)
60. **부산과학기술원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김무성·허원제·현기환·유재중·서병수·유기준·이진복·이종혁·정의화·박대해·장제원·허태열 의원 발의)
61.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박희태·정의화·고홍길·이경제·정미경·조진래·김소남·김옥이·강석호·신지호·김무성·윤상현·유성엽·이애주·여상규·이법관·이진복·이두아·김혜성·권영진·배은희·정양석·홍준표·정희수·이춘석·장윤석·허천·이한성·이병석·윤석용·홍일표·권택기·조진형·주호영·진성호·유정현·황진하·서상기·김정권·조전혁·주광덕·임동규·서병수·박종근·김성동·원유철·나성린·이철우·유기준·정진섭·안홍준·백성운·나경원·최병국·손범규·이군현·김태환·이명규·정갑윤·김충환·강길부·한선교·이한구·황우여·김성수·김광립·조경태·윤영·정해걸·최구식·신성범·윤진식·박순자·박민식·구상찬·김금래·이정현·안효대·손숙미·조원진·허태열·송광호·전재희·권성동·이종혁·김태원·박영아·한기호·김동성·김태호·이은재·이상득·김성태·진영·이종구·강명순·이성현·김성조·정몽준·홍사덕·허원제·박준선·신상진·정두언·신영수·유재중·김을동·김성희·박보환·정옥임·조윤선·김형오·이화수·김선동·강성천·홍재형·권경석·유정복·김영우·전여옥·최규식·이종걸·신건·장세환·문학진·박지원·박기춘·송민순·장광근·이인기·이정선·박대해·장제원·김학용·이상권·홍정옥·이사철·정영희·성윤환·이재선·김창수·임영호·이진삼·류근찬·변용전·김용구·박선영·노철래·최규성·최인기·김영환·서종표·이강래·송영선·김재경·이윤성·임해규·이학재·박진·김용태·배영식·이법래·김호연·원희목·박상은·안상수 의원 발의)
62.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안효대·노철래·김기현·신성범·배은희·강길부·최병국·장제원·이윤석·김무성·이화수·김소남·이은재·이사철·강창일·최구식·서병수·원유철 의원 발의)

63. 한국방사선의 · 과학기술원법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유기준 · 김세연 · 이종혁 · 강성천 · 윤석용 · 김무성 · 박민식 · 유재중 · 조경태 · 장제원 · 박대해 · 현기환 · 서병수 · 김정훈 · 정의화 · 허원제 · 권성동 · 이정선 · 김호연 · 유정현 · 이진복 · 진영 · 박준선 · 박상은 · 김옥이 · 허태열 · 김형오 · 손숙미 · 신상진 의원 발의)

64. 가장 첨단 방사선 의 · 과학복합단지 조성 에 관한 특별법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유기준 · 김세연 · 이종혁 · 강성천 · 윤석용 · 김무성 · 박민식 · 유재중 · 조경태 · 장제원 · 박대해 · 현기환 · 서병수 · 김정훈 · 정의화 · 허원제 · 권성동 · 이정선 · 김호연 · 유정현 · 이진복 · 진영 · 박준선 · 박상은 · 김옥이 · 허태열 · 김형오 · 손숙미 · 신상진 의원 발의)

65.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박보환 · 조전혁 · 정두언 · 조진래 · 이종혁 · 배은희 · 권영진 · 김무성 · 김세연 · 김영진 의원 발의)

6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백재현 · 홍영표 · 오제세 · 안민석 · 유선호 · 김성곤 · 유성엽 · 박은수 · 송훈석 · 조영택 · 이용섭 · 이용경 · 박선숙 의원 발의)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 · 정두언 · 조전혁 · 박보환 · 배은희 · 허원제 · 김성동 · 심재철 · 유일호 · 김세연 · 김선동 · 임해규 의원 발의)

6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김재윤 · 양승조 · 유선호 · 이종걸 · 이춘석 · 전해숙 · 정장선 · 조영택 · 주승용 · 최종원 의원 발의)

69. 과학연구단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 · 유성엽 · 김학송 · 안민석 · 김영진 · 홍희덕 · 강기갑 · 곽정숙 · 이정희 · 金先東 · 권경석 의원 발의)

70.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정부 제출)

7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 · 이용섭 · 강성중 · 김재균 · 강기정 · 김동철 · 박주선 · 강창일 · 이낙연 · 장병완 ·

이석현 · 유선호 의원 발의)

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4분)

○**위원장 변재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주호 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 제46항 · 제55항 · 제56항 · 제7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법률은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시국사건 등의 사유로 교사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동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2001년에 완료되었으므로 당해 법률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은 2000년 8월 29일 체결, 2011년 8월 23일에 갱신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설립협정에 따라 설립 · 운영 중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및 전문대

학의 자율적 평가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안 법률의 평가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조항을 동법으로 이관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규정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의 체계적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제고와 함께 이공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 이유를 감안하시어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감안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상정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 I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의 경우에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3월 7일 개정되었으므로 교육공무원도 동일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상정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 II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정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4년의 수업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인데 이미 개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4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1

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정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 III 입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인 녹색과학기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과학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자 녹색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녹색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소관 중앙정부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전문분야별로 산재되어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녹색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을 집중시키고 관련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특화된 녹색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신설하려는 녹색과학기술원의 연구분야를 특화시킴으로써 기존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녹색과학기술연구 및 인재양성과의 차별성 확보 및 특화시킬 수 있는 분야의 발굴 등 기존 유사기관과의 중복성을 최소화시키고 집중도를 높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하실 분……

○김영진 위원 대체토론 안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변재일 만약에 지금 대체토론 안 하시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경우에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고 또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나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특별히 대체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았어도 의견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 중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마친 다음에, 나머지 법률안과 의견제시의 건은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 현안을 보고할 순서입니다.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안이 없기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잠시 중단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74. 현안보고

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나. 교장공모제 관련 법령개선 추진

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10시23분)

○**위원장 변재일**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 내용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사항, 교장공모제 관련 법령개선 추진 사항,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사분위 관련 사항을 현안보고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급박하게 소집되는 바람에 사분위 관계자한테 출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성원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보임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입니다.

이근재 대변인입니다.

윤대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장입니다.

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여 균형적 관점에서 교과서의 내용이 서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 독재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용어에 대해 학계와 판례 등의 의견을 존중하여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입니다.

2011년 9월 16일 교장공모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교 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기준과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학교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적 교실수업 구현을 위해 성취평가제를 학교급과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기준을 평가하고 'A-B-C-D-E'로 성취도를 부여하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문교과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신 장관님께 여쭙 보고 그리고 현안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에 대학의 체육진흥시설 설치 문제, 이게 지금 FISU로부터 굉장히 엄중한 촉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또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마는 이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촉구를 하셨고, 지금 저희가 교과부 내에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남부대학하고 광주여대에 설치될 체육시설인데 그것은 지금 현장실사까지 다 마쳐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당 부서, 교과부와 행정안전부의 현장실사도 마쳐서 그 보고서도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차질 없도록 곧 이삼일 내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을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관련인데요, 지난 11월 8일 우리 교과부에서 중학교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할 때 그 이전 집필기준하고는 달리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9 혁명 그리고 근현대사 속에 빛나는 우리의 민족·민주운동 이것을 대강화의 원칙이라는 그 원칙하에서 '전면삭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경악을 했고 특히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은 참 자랑스럽고 빛나는 민족·민주운동 3대 운동인데 어떻게 대강화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기왕에 집필기준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취급되는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각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 시정을 요구했고 특히 본 위원을 포함해서 광주의 200여 개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관

께서 고등학교 집필기준에는 이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 포함된 것도 보면 대강화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여전히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학교 집필기준에는 그것이 시정되지 않은 채 전면삭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검정 기준에 일부 그런 의지가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세부 검정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3·1 운동의 선열들, 4·19 혁명에 자기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영령들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시정요구가 있으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검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강화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후퇴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고, 더구나 독재는 미화시키고 민족·민주운동은 전면 삭제시킨다, 또 그나마 시정요구에 따라서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중학교 집필기준에는 그대로 전면삭제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집필기준에도 대강화 원칙으로만 이렇게 시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적하신 대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정 기준에 명시화를 했고요, 특히 고등학교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닙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충분하다고 표현하시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미 아까 말씀한 민족·민주운동 이 3대 운동은 지난번 집필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지난 정권도 다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정부이고 우리 국민의 정부이고,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그때는 지금같이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역사학자들이나 보수·진보 학자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공감을 하고 사실상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집필기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필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던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오히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중학교 집필기준에는 그대로 전면삭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위개념인…… 그렇지요? 누가 봐도 집필기준과 검정 기준은 하위개념입니다. 검정 기준은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 출판한 출판사들, 관계자들,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집필하고 펴는 데 있어서의 그 절차와 기준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필기준에 안 들어가거나, 그러나 검정 기준에 일부 들어갔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께서는 중학교 집필기준에 누락된 것, 그다음에 고등학교 집필기준에 대강화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이 3대 운동을 대충대충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은 역사적 후퇴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부분은 대강화 원칙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강화 원칙이 사실 2007년도에 이미 정해진 사안이고요.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해진 것인 만큼 또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김영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질문을 복잡하게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강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역사교과서를 서술하는 데 대한 기준의 중심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왜 대강화 원칙을 얘기하면서 민족·민주운동은 대충 기록하고 유신독재나 5·6공 계엄신군부의 횡포, 반역사적·반민주적 역사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겁니까? 잘못된 과거의 역사는 기록함으로써 다시는 후대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유신

과 계엄신군부에 대한 기록을 분명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강화 원칙이라는 것을 편중적인 잣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은 대충대충 기록하고 유신과 계엄신군부의 기록은 말살해 버린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강화 원칙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과 계엄신군부의 횡포 이런 잘못된 것들은 다시 살려 내야 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

아니, 그 반영을 집필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하위개념인 검정 기준에다가, 그것도 그 문구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지난번하고 지금하고는 불과 아주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충분히 반영했다든가 또 정직성이 거기에 반영됐다든가 또 전면삭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 역사학자들과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대강화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그게 문구가 얼마나 길게 들어갔느냐 짧게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강화라는 원칙하에서 서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집필기준에 비해서 좀 짧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결코 중요성이나……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길게 들어가고 짧게 들어가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왜곡을 하십니까?

지금 처음부터 일관되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민주적인 우리 자랑스러운 3·1 운동과 4·19 혁명과 5·18 민주영령들의 희생을, 고난을 자초한 역사는 대충 기록하고 그리고 유신과 5·18 계엄신군부의 역사는 완전히 전면 삭제해 버리고, 이것은 독재는 미화시키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고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김영진 위원** 그러면 왜 대강화 원칙이라는 것을 민주화운동과 민족운동에는 그렇게 적용하고 여기에는 삭제할 시키는 겁니까?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죄송합니다만 대강화 원칙에 따라서 빠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위원들 간에 쪽 저희가 교육과정심의회나 또 국편이나 이런 쪽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냥 대강화라는 원칙으로 이게 빠져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충분히 기술된다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실상……

○**위원장 변재일**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영진 위원**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의 문제가 서막이 어디에 있느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같은 정책위원들과 자문위원들 회의에서 시작된 겁니다. 뉴라이트 학자 한 분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게재하자고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 자문위원과 정책위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했고 또 19명이 집단으로 성명도 냈고 그 후로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 안 했다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됐다가 하는 말씀은 옳지 않고요. 이미 그때부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역사교과서의 왜곡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고등학교 집필기준에 대강화 원칙 적용해 가지고 대충 맡았다고 그래서 ‘이것은 다 절차가 끝났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엄연히 중학교 집필기준에는 이것이 완전히 전면 삭제로 돼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집필기준에도 대강화 원칙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독재는 미화되고 민족·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는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 그것은 삭제시켜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제가……

○**위원장 변재일** 보충질의 하시지요.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교장공모제 문제는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석교사제하고 두 제도를 놓고 우리 여야가 여기서 고민해 가지고 한쪽 그리고 반대쪽의 얘기를 같이 들어서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를 같이 함께 우리가 여기서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수석교사제는 그 입법 취지를 그대로 살리고 교장공모제는 그 입법 취지를 전부 다 사문화시킨 거지요. 15%, 혁신학교 실시했던 당시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것은 너무나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교장공모제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래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입법 취지가 완전히 짓밟힌 거니까.

그런데 수석교사제하고 교장공모제, 그 침해하게 대립된 2개를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소위 양해해서 통과시켰는데 마지막에는 수석교사제는 입법 취지 그대로 살리고 교장공모제는 정부의 뜻과 의지에 맞는 것만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능멸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의원을 역임하셨고 또 이런 일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이 시행령에서 입법 취지를 말살시키는 이런 시도는 안 하셔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입법화는 그동안 법제화가 충분치 않았던 교장공모제도를 법제화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부 공모자격을 20년 경력에서 15년으로 내린다는지 또 개방형 공모의 학교 유형을 더 늘린다는지 하는 그런 법령 개정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적하신 자율형 학교의 15%를 내부형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반응과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것을 지금 당장 변화시키는데는 상당히 큰 무리가 따른다, 교장 적체가 너무 심각하고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은 상황에서 좀 무리가 따른다 해서 그냥 현행대로

유지, 대통령령으로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위원님의 입법 취지를 저희들이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세요.

○**김영진 위원** 예.

이미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15%, 혁신학교·자율학교 15%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여야 위원들이 공동발의를 했고 우리 전문위원이 그에 대한 보고도 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여야가, 196명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만들면서 15% 입법 취지를 백지화시키는 이것은 하나의 횡포에 다름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장공모제도를 통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장들에 대한, 대단히 참 바람직하다 그리고 혁신학교라든가 자율학교에 대해서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전국의 학운위의, 우리 학부형들이나 교육전문가들의 견해가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그 제도에 대해서 일부 특정한 한 단체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래서 그쪽에 장관께서 편승하거나 그쪽의 의견을 더 중시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안을 우리가 다시 발의를 해서 정면으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것은 하나의 입법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국회 사상 초유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시비비가 더 이상 단두대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장관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국회의원이……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세요.

○**김영진 위원** 예.

국회의원이 낸 법안을, 저도 정부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世淵 委員** 순서를 좀……

○**위원장 변재일** 김선동 위원님 안 계셔……

○**金世淵 委員** 박영아 위원님 먼저……

○**위원장 변재일** 박영아 위원 하시지요.

○**朴英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관.

먼저, 중등 학사관리 관련돼 가지고 절대평가 제도의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적평가 시스템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또다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지나치게 자주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도 이것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물론 이해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학부모나 현장에서 또 입시 전문가들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 보면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실 우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외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특목고 열풍이 좀 주춤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강남이라든가 특목고가 또 결국은 입시에 유리한 방향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가 어떤 신뢰성 측면이 확보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입시의 절대적인 지표로 학교 성적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어떤 제한 없이 절대평가로 한다면 각 학교의 성적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능 부분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으로 눈술이랄까 또는 대학별 어떤 형태의 시험 같은 것들이,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지만 있는 제도나 있는 틀 안에서 입시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질의할 게 있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2014년도에 도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내년엔 물론 특성화고는 도입합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제 입시에 반영되는 해는 2017학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부 내내 사실은 학생들을 점수 위주가 아니고 역량 중심으로 하는 평가 제도를 위한 입학사정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2017학년도가 되면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더 이상 늦출 수도 없습니다. 워낙 9등급 상대평가제가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또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장기적인 플랜은 항상 3년 전에 예고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 정도한테 이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당장 특목고 입시랑 관계가 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고요, 2학년은……

○**朴英娥 委員**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교과부가 수십 가지의 제도를 도입을 했어도 결국 입시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고요. 경쟁이 있는 거고, 아무리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의 숫자가 대입 정원보다 초과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상위권 대학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지금 수능도 그렇고요. 수능도 지금 또 결국 제도를, 물론 예고된 것이지만 결국 또 제도를 바꿨고요. 이제 과학이나 사회탐구 경우가 두 과목으로 줄고, 저는 그조차도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과목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규제고, 결국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주호 장관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입학정책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걸 떠나서 자주 바꾼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이것을 좀 더, 충분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이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이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필기준에 들어가지 않았

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장관님의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신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특히 다른 부분 세세한 것 말고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정신에 따른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확정을 지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제가 과학을 전공한 측면에서요, 저는 제가 과학을 전공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과학이야말로 혁신의 정신, 그 혁신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 자유주의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과학을 좋아했고 전공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 체제에 있어서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못지않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자는 자유주의가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굉장히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헌법정신의 굉장히 핵심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에 무한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향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전체 맥락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지향점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최근 자유민주주의 논쟁에서 일부가 자유주의를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관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개념으로서 자유주의는 경제정책을 넘어서 인간 본성에 기초한 철학이자 삶의 양식이며 인류 역사를 관통해 온 보편적 가치입니다.

인류 역사는 개인의 자유가 증대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인류는 문명사회의

시작과 함께 부족국가, 왕조국가, 근대국가를 거쳐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르렀습니다. 근대국가 이전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분사회였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 자유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로 근대적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은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서명한 마그나카르타에서 나옵니다. 왕이 귀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으려면 그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걷어 쓸지 결정하는 과정에 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계약서가 바로 마그나카르타이며 이는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참정권을 인정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유인은 정당한 합법적 절차 없이 구속되거나 투옥되거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개인의 신성한 권리에 대한 절대권력의 견제를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권력 또는 절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정치 체제가 바로 자유주의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기본권은 생명 및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권, 종교의 자유를 망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자유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체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朴英娥 委員** 자유주의요. 제가 질의드린 것이요, 자유주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따로 얘기하듯이. 그러면 자유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체제가 어떤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뭐……

○**朴英娥 委員** 전체주의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문제로 국민이 바로 주권자인 체제이며 그 반대편에는 1인에 의한 독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좀 더 진화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민주주의가 없는 자유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그리고 장관님 답변 과정에서 ‘무엇의 반대는 무엇이나’ 하는 식의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은 토론입니다.

논리학에서도 ‘무엇의 반대는 무엇이니까 무엇의 반대는 뭐다’ 이런 식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답변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거부하시거나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저는 과거 역사에서……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유주의는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그나카르타 이후에 영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입헌민주주의가 실현되기까지는 권력이 국왕이라는 1인에 집중된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 체제였습니다. 이후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됨으로써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세요.

○**朴英娥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거꾸로 자유주의가 결여된 민주주의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인민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목적으로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지칭하여도 결국 전체주의일 뿐입니다.

과거에 나치즘을 피해 뉴질랜드로 망명한 철학자 칼 포퍼는 그의 저서……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세요!

○**朴英娥 委員** 예.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통해 전체주의의 정신적 기원과 역사적 전개에 항상……

○**위원장 변재일** 마이크 끄겠습니다. 더 이상……

○**朴英娥 委員** 현실적 오류를 비교하여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 역사는 바로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잔혹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시고 보충질의 하세요!

○**朴英娥 委員** 자유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위원장 변재일** 보충질의 하세요!

○**朴英娥 委員** 한 문장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더 이상…… 끄세요, 이제.

○**朴英娥 委員** 자유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허상일 뿐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위원장 변재일** 지금 이것은 시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朴英娥 委員**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지금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현안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철학을 논의하는 겁니다, 지금 박영아 위원이 말 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 발언을 통해 가지고서 ‘자유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뭐냐’ 그런 식의, 자유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은 그리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을 인민민주주의로 끌어내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을 가져 왔습니까?

○**朴英娥 委員** 위원장님, 제가 그런 질의 안 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의 반대가 뭐냐고 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김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려면 하세요.

○**金世淵 委員** 예.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아주 공정한 의사진행을 해 오신 점에 대해서 저는 항상 경의를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여야 이례한 분씩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변재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기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이 과도하게 시간 많이 쓰신 것, 그래서 박영아 위원님한테 시간을 계속 양해한 겁니다. 그것이, 발언 내용이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자제를 시킨 겁니다, 발언 내용 때문에.

○**金世淵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의 발언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게……

○**위원장 변재일** 위원의 발언 시간을 일단은 7분 이상을 양해한 것에 대해서, 김영진 위원의 발언 시간을 7분 이상 양해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영아 위원의 발언 시간과 다른 위원

의 발언 시간도 그렇게 양해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박영아 위원의 질의 내용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파행을 겪고 난리…… 알지 않습니까? 그 파행을 다시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金世淵 委員** 하지만 국회라는 곳이 어떤 입법 기술적인 내용들만 다루는 장이 되기보다는 정치철학적인 면에서 만약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위원장 변재일** 정치철학적인 얘기 하는 것 좋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 부분까지도……

○**위원장 변재일** 발언 시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드리는데……

○**金世淵 委員** 심도 있는 논의가 보장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이 가로막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저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지만 앞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고,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위원장님, 제가 시간 초과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마무리하고, 아까 김세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변재일** 이따가 보충질의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영아 위원 보충질의 할 시간. 김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朴英娥 委員**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십시오.

○**金世淵 委員**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위원들의 원활한 질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마이크를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험해 본 다른 상임위나 또는 특위에서는 항상 시간이 초과했을 때 위원장께 허락을 받아서 1분이면 1분, 추가적인 시간 안에서 발언을 보장받고 안 되면 마이크를 끄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결국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이런 발언 시간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이런 의사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초 발언자의 발언 시간을 제어하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서상기 위원님과 교과부 통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더 늘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발언 내용이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 중에서 박영아 위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지금 덮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끌어내어 그때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때 말했던 윤리위원회 제소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어지는 발언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정치적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발언하시겠다고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발언시간 관련해서……

○**위원장 변재일** 예, 김세연 위원님……

○**金世淵 委員** 위원장님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초 발언이 지나치게 너무 오래 길었기 때문에 처음에 7분으로 제한했습니다마는 10분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世淵 委員** 그런데 그것은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씩 되면……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7분에 동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金世淵 委員**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7분이라는 시간을 정했으면 7분의 시간을 지키고 마무리가 안 되었으면 1분의 시간을 더 주고……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1분의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10분으로 늘리는 것은 전체적 의사진행에……

○**위원장 변재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최초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자제를 요청했으나 자제가 되지 않았고, 그러나 마이크를 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아 위원님한테 많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발언의 자제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김세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박영아 위원의 정치적 소신, 정치 철학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보충질의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7분이 지나고 나서 여지껏 관례는 1, 2분 내에서 마무리할 시간을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만히 진행되어 왔고 오늘 그러한 의사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원칙을 그냥 지켜 달라면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과연 시간이 2분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크를 끌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불씨가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진행은 7분을 원칙으로 하고 김세연 위원이 원래 방침대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2분의 여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에. 그 원칙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유정 위원**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徐相箕 委員** 먼저 하세요.

○**위원장 변재일** 김유정 위원 하시지요.

○**김유정 위원** 민주당 김유정 위원입니다.

한참 만에 이렇게 여야가 마주하고 상임위를 개최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또 자괴감도 듭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아 위원께서 ‘정치적 소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위원의 정치적 소신은 존중되고 어떤 위원의 정치적 소신은 폄하되고 훼손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지난 국감 때 야당 위원들이 이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문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인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라는 저희들의 소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아 위원께서 국감을 파행으로 이끄는 그러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야당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가 없고 18대국회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어떤 미안함의 표시나 유감 표명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께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최소한의 양심에 기반한 절차도 없이 이 문제가 ‘정치적 소신 발언’ 이렇게 얘기되면서 질의시간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러면서 사과 한 마디 없이 강의 일변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야당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 ‘하는 듯한’이 아니고 명예를 훼손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박영아 위원의 사과를 다시 한번 받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서상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徐相箕 委員 위원장님 평소에 아주 합리적이고 월만한 의사진행을 항상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한번 이것은 당장 문제 삼는다 이런 것보다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사회 어느 모임이든지 사회 하시는 입장에서 위원장, 의장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중단을 시키고 그런 것은 진행하시는 분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그것은 조금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여기에서 덮고, 그다음에 과연 위원장님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시켜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아 위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간에 논의된 내용에 따라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박영아 위원의 질의와 발언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점, 그 이후에 영상자료의 파기 문제 여러 가지가 서로 간에 사과발언 요청이 있었고 사과로 인해서 몇 번의 파행이 있었고 엄청난 노력을 해 와서 정상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야 위원 간에 지난 모든 일들이 서로 간에 묵시적 양해가 된 상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묵시적 양해 상태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과하지 않았지 않느냐, 아니면 징계 문제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무리하게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위원의 소신 발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기된 문제점, 그동안 여야 간에 양해가 되었다고 생각한 점 오늘 양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상희 위원님 가시고……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성엽 위원 예.

정읍 출신 유성엽 위원입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도 또 여러 가지 긴장관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떠나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 한도 끝도 없고 또 쓸데없는 논쟁이 많이 가열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렇게 변경해서 확정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2009년도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는 것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은 몇 년에 한번씩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은 수시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법에 5년이다 10년이다 없이 그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냥 정부 방침으로 바꾸려면 1년만에도 바꿀 수도 있고 2년만에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것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것이 수시 개정 원칙입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면 또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면 반드시 이런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는 집필기준을 또 바꾸어야 하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 집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교과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어, 국사, 경제, 도덕, 이 네 과목에 대해서만 집필기준에 대해서……

○**유성엽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독재 문제 등등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오히려 이것이 우리 남한 내에서 여러 가지 또 남남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해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 1년 남았습니다.

○**유성엽 위원** 이 시점으로 봐도 여기에서 보류하시지요, 이것?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바꾸려고 그러는 것?

내용을 떠나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굳이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집필기준 변경하겠다고 해서 또 시끄럽게 될 것 아닙니까, 나라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이념적으로 어떤 편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교과서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서……

○**유성엽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전임 정권 때의 질을 바꾸자, 이것을 틀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이 몇 년도 되지 않아서 교육과정 개편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경을 추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 취지도 이해는 해요. 물론 이명박 정부의 어떤 국정 방침이 있으면 바꾸어 보고 싶은 마음 갖는 것은 좋은데, 더군다나 임기가 4년이 흘러 버리고 굳이 1년이 남은 시점에 왔으면…… 2009년에나 2008년에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이것 불필요한 논란만 하고 1년 후에는 또 재개정 논의 때문에 국회도 시끄러워져야 되고 정부도 갈등할 것 같은데, 이것 보류할 용의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사실 이번 교육과정의…… 2009 개정, 2011년 개정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보다 창의성을 더 길러 주고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키워주는 그런 측면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학습량을 20%씩 덜어낸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훨씬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유성엽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내용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장관님께서 굳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승인받은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91년도에 북한도 유엔에 가입이 되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유성엽 위원** 유엔 가입이 되었잖아요. 9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그러면 북한도 그 당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몰라도 91년 이후에는 북한도 유엔에서 인정하는 어떤 국가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국제법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지만 정부 승인에 관련되어서 유엔의……

○유성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거 회귀적이다, 이것이. 오히려 현재는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나아가야 할 이런 시점에서 그냥 현상 유지도 아니고 과거로 이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만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무리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셔도 임기가 이제 1년 남은 정부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시간이 남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에 관해서도 교과부 방침은 뭐니까?

가급적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해야겠다는 방침입니까? 어떤 방침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입법해 주신 대로 교장 공모가 과거에는 법적 기준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유성엽 위원 제가 최근에 어디 책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 하면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의 위상이나 역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봐야 된다, 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아파트의 주인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이 주인이고, 그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직원들은 아파트를 그 주인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관리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봐서 대통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 정도로 생각해서 주인들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학교도 교장이 거기에서 권력자로 이렇게 취급받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정말 교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학교를 제대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 무슨 학교에서 제일 대장이 되어 가지고 학교 교권을 막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자리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것이 교장 공모제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 그래서 저는 교장 공모제는 더욱 확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 가지고 두다 보면 계속 그 승진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들 또 부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막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 분야에서 수장이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 힘을 많이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학교를 제대로 잘 관리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면 저는 교장 공모제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래서 이번에 법제화를 통해서……

○유성엽 위원 그랬다면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자율학교라든지 아주 특별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 교장자격증 소지 제한을 푸는 이유는 거의 교장자격증 그것을 절대 요건으로 보지 말라는 그런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취지를 감안해서라도 좀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교장 공모 자체를 도입한 것만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장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교장 자격을 현직 경험 20년에서 15년으로 내린단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안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당장은 그것을 확대하기에 많은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저는 기왕에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나 환경을 고치는 과정에서는 다소 기득권자들의 반발 내지는 어떤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고려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만이 학교가 좀 바뀌고 변화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너무 기득권 저항에 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할 때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배은희 위원님, 하실 겁니까?

○배은희 위원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변재일 예, 말씀하시지요

○배은희 위원 오늘 안건, 이 현안보고 내용 외의 질문 해도 됩니까?

○위원장 변재일 좋습니다.

○배은희 위원 장관님, 우선 저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몇 분 지적하셨듯이 평가방법 개선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현장에서 받고 있고 또 절대평가의 단점들이 많이 있어서 상대평가로 갔다가 또다시 절대평가로 가니까 그런 지적되었던 단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좀 우려를 불식시키는 교과부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사실 9등급 상대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절대평가를 95년도에 도입했을 때……

○배은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시작되었는데 시간은…… 저는 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그 당시에 는 문제가 절대평가의 문제도 더 부각이 되었는데 그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부각되었던 문제는 학점 부풀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보 공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정부의 감시 감독 역할도 더 강화시키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감시 감독으로 될까요? 현장에서 늘 학생과 부딪히는 선생님들이 획기적으로 리셋이 안 되시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저희들 방안인데요. 사실 그 절대평가라는 것이 잘 되려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느냐를 가지고 공정하게 학생들을 평가하면 그런 부풀리기 논란도 많이 불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지난 95년에 할 때는 세세하게 개발하는 그런 충분한 기간 없이 그냥 바로 도입을 해서 부작용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 기준이나 또 성

취 기준을 세세하게 잘 개발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교원 연수도 철저히 해서 교사 분들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성취 기준이라는 것도 밖에서 미리 배워 갖고 온 애들의 성취 기준하고 그냥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선생님을 믿고 오는 애들의 성취 기준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개인의 향상도를 성취 기준으로 한다든지 절대평가, 질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평가로 해서 어떤 점수에 도달한 것을 완성되었다고 보면 밖에서 미리 배우고 선행학습하고 온 아이들이 절대평가 시스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세세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숙제를 내 줬는데 다 해 왔느냐, 아니면 수업시간에 수업에 참여도가 어땠느냐, 질문이라든지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활동을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한 수업을 끝냈으면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정말 수업에 잘 참여를 했는지 하는 것이 몇 개 평가가 꾸준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는 50점 받던 애가 100점까지 갔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훨씬 더 높이 평가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런 절대평가가 성취도를 NEIS랑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각 수업 끝나고 NEIS에 그것을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 개발은 좀 하고 계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선생님들의 평가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교습 방법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계속 선생님들이 더 고민하셔야 되고 사실 획일적으로 이렇게 9등급으로 해서 잘라서 아이들의 점수를 내는 방식은 사실은 선생님들의 평가라는 활동이 전혀 교육 활동과 연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정말 공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더 논의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기준 개발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NEIS 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이게 바로 들어가고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부모가 바로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가면 인폼이 되는, 이메일로 간다든지 문자로 간다든지 해서 그때그때 부모들이 즉 꾸준히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고 선생님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현안보고 관련 아닌 것 질문드릴 것은 학교 폭력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학폭위에 학부모들이 과반 이상 들어가는 법 내서 통과되어서 지금 1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게 얼마큼 학폭위가 학부모 과반수 이상 들어간 것으로 꾸며졌는지 그것 아니면 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 아이가 고민하면서 주변에 어디다가 이것을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보호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전혀 방법을 못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앞으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 연 2회 한다, 그리고 상담교사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상담교사도 진로상담 아니고 이러한 상담교사 각 학교에 적어도 한 사람씩은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질문드린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배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상담교사도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마다 정규직처럼 방학 때도 있는 그런 상담교사를 배치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그 상담교사의 처우도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교사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담교사를 얼마만큼 처우를 하면서 각 학교에 그야말로 한 사람씩 다 정규직처럼 되는지 그것하고요.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나머지 하나 더……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도 담임교사가 아이를 상담을 했었던 말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상한 징후를 발견을 했는데 애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이 아이들을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학폭위라든지 이런 것에 연결해서 그다음 단계로 진행을 못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과부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그 세 가지 좀…… 죄송합니다, 질문이 길어서.

간단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말씀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이렇게 자살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는 말씀과 또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1800명의 전문상담사를 현장에 배치하는데요. 현직 교사로 하기에는 지금 행안부의 정원하고 교섭이 어려워져서 지금 아직까지 그건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직 교사 자격을 가진 상담 요원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자격이 아니라 처우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학부모 위원 위촉은 저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담임이나 사실 교사 분들이 그런 케이스에 접했을 때 충분히 그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교원의 상담 기능에 대한 연수를 대폭 강화하려고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상희 위원** 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저는 교과부장관님께서 소신인지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곤혹스러운 일만 터지는 데요, 어쨌습니까?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지금 집필 기준에서는 못하더라도 검정 기준의 수정을, 말하자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인데 이 정도 되면 집필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관련해서 몇 개월 동안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과 관련되어서 물의를 빚은 교과부에서는 장관께서 수준은 어느 수준이 되든지 간에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명백한 것이거든요. 이전의 독재, 권위주의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우리 대한민국이 한 세대만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낸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교과부에서, 정부에서 부정을 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부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애매모호하게 하려고 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이것을 지금 ‘검정 기준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필 기준은 바꾸지 않고 ‘어쨌든 교과서는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명확하게, 이 절차상의 문제 계속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교과부에서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역사교과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김상희 위원** 위원님이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세부 검정 기준에 또 추가로 반영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또 중학교……

○**김상희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검정 기준에 반영시켰다고 하시는데 ‘검정 기준에 반영시켰으니 교과서 안 변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 가지고 그렇게 물의를 빚고 결국은 ‘교과서는 안 변하게 되었으니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 이 문제를 넘어갑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사실은 대강화라는 큰 원칙이 사실 지난……

○**김상희 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정도 좀 잘못되어 있고 집필 기준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면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관께서 이렇게 그냥 국민들께 ‘교과서 안 변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강화라는 원칙 때문에 그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던 것이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김상희 위원** 대강화의 원칙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대강화의 원칙으로 집필 기준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집필 기준에 다시 명확하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장공모제 관련해서는 왜 저는 교과부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우리가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가 분명한데 왜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시행령을 하셔서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다시 이것을 원래로 되돌리려고 하시는지 지금 교장 인사 적체가 너무 심각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할 때는 그것 다 예상됐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행령에서 이렇게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공모제는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

현장의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번에 국회에서 입법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자율학교의 100분의 15 관련된 사안은 저희가 이것을 풀기에는 현장에 너무나 많은 우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김상희 위원 현장의 많은 우려라고 하는 것이 인사적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다 예견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개정한 것이예요. 그래서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학교의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수준을 높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따라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월권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교 내신평가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고교내신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의견수렴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한 2년 반 전에 국가미래기획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TF팀 구성해서 죽 연구가 시작돼서 계속 한 60여 차례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김상희 위원 저는 이것 내신절대평가제 관련해서 국민들 의견 수렴하는 그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어느 것보다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대입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위원 국민들 대입제도 바뀌는데 아주 신물이 나고 그것으로 인한 이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교내신 절대평가제는 결과적으로는 특목고와 자사고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지금 자사고 관련해서 입학정원 못 채우고 아주 이것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자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결코 그것은 아니

고요……

○김상희 위원 그런 꿈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이 절대평가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2년 반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이고 계속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듬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자사고를 이명박 정부에서 100개 만들려고 하셨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공약은 100개였지만……

○김상희 위원 100개였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만 결코 무리하게……

○김상희 위원 100개였고 지금 자사고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 자사고 100개와 관련된 이것저는 정책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사고를 활성화시켜 줄 겁니다. 특목고를 활성화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사교육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자사고 관련해서 도입이 사실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가서 도입되는 것이고요. 결코 자사고를……

○김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하지 마세요. 좀 더 검토하게 두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게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김상희 위원 좀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이게 지금 10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발의를 했지요? 그렇지요? 청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수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이것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는데 그런데 지금 교과부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으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지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가 많으므로 조례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도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 부분은 위낙 학교의 현장 분위기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권조례 관련해서도 많은 현장의 걱정들이 있어서 성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 하는 의견을 계속 내 왔었고요. 특히나 조례를 통한 것이 아니고 학교장의 규칙을 통해서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항상……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시지요.

○**김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상당 부분들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과부에 권고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행을 하는 건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김상희 위원** 이게 지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도 이미 하고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전혀 반대가 없고요. 그렇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김상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상희 위원** 교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 단체나 일부 교사들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것은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이 입법발의를 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재일**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世淵 委員** 이렇게 오랜만에 상임위가 열려서 그동안 좀 짊었어야 될 문제들을 한 번에 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자유민주주의 논쟁에 대해서 입장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현대사의 평가를 지금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편파적인 시각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평가, 현실에서의 평가는 당연히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교과서에 실을 역사적인 평가를 지금 10년 20년 단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역사를 너무 짧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50년 100년 단위의 평가가 역사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논쟁의 옳고 그름을 저는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의 비중을 너무 미시적으로 확대해서 볼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차체에 역사 과목에서 다를 어떤 시평을 상당히 좀 지금보다는 멀리 할 방법으로 찾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교과부에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보는 부분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시비를 걸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근원적인 문제 제공을 교과부에서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치유를 하되 차체에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으로 인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을 만드는 방향에서 좀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최근에 중학생들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Wee클래스에 대한 지원을 더 높여 달라는 요청부터 제가 장관님께 그동안 기회 닿을 때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조금의 개선이라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진학 진로와는 차원이 다른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학교의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알려져서 지금 이렇게 신문에 실리는 것이지 그동안도 있어 왔을 것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겁니다. 아주 초기 단계의 시초를 우리가 지금 예고를 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Wee클래스라든가 해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특히 전문상담사는 저희가 내년도에 1800명 투입을 하고 Wee클래스의 학교폭력 상담기능 또 교원들의 상담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강화 등 대폭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특히 계량적인 어떤 목표를 평가지표로 삼아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평가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원적이고 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해당 시설들과 중재 노력을 3년 전부터 문제 제기는 해 왔었고 특히 지난 1년 동안에 평생교육 관련한 부서와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중재 노력을 해 왔는데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전혀 저희 의원실하고 어떤 발표한다는 그런 논의 없이 그대로 보도자료 배포가 되고 그냥 정책이 결정돼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점은 중재 과정에서 저희도 고민의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지금 실질적인 대안교육을 해 오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대안학교로 전환하려는 그런 촉진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그 본질상 정규교육 체계 안에서 하기 어려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무리하게 다 이 안에 틀을 맞춰서 집어넣으려면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관리 감독은 아주 철저하게 하는 형태가 되면 사실 모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감스러움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하고요.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 대책 수립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의원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 있어서 일부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대기업과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에 있어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배은희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과부에서 입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고 그것이 교과부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의 변화 정도로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별 학생들 인생에 미치는 영향 너무나 큼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목고의……

이 질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특목고에 훨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내지는 그 강도를 많이 늦추어서, 하나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2017학년도 입시에 본격적으로 절대평가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늦추는 것은 또, 사실 지금 현재 상대평가에 따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학급에서 서로 너무나 지나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든지 창의적인 수업의 협동수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지금 저희가 교육과정을 다 개편하면서 2009, 2011 교육과정 개편하고도 취지가 맞지 않고 해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는 다른 학교 변화에 너무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어떤 제도든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방향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선진국에서 우리처럼 9등급 상대평가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우리 제도를 선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더 줄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보완책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유정 위원** 민주당 김유정 위원입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께서 계속 ‘대강화’ 이런 말씀 하고 계시는데요, 대강화든 소강화든 더 이상 논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정부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18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저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과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상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밀어붙이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저는 역사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교과서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보았습니다. 편향적이 아니라고 장관께서 계속 강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의 의도하에 벌어지는 역사교과서의 개악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에도 위반하는 것이고요, 또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개정과 집필기준은 온전히 이주호 장관님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결국 모든 책임을 이주호 장관께서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훗날 역사가 평가하겠습니다마는 이주호 장관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명박 정권의 주특기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이 입법취지에 반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냈으로써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고,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교과부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교장공모제 관련해서도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한 사항을 넘어서는, 그런 국회 입법취지를 폄훼하고 훼손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 시행령에서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심사·선정 시 하자를 이유로 이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선정 시 하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취소됐습니다.

○**김유정 위원** 언제 취소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최종안에서……

○**김유정 위원** 최종안은 언제 나왔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장 김관복** 학교지원국장 김관복입니다.

입법예고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서 법제처 최종 심사안에서……

○**김유정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장 김관복** 지난주에 했습니다.

○**김유정 위원** 지난주 며칠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장 김관복**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김유정 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논란이 들끓고 반발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하지 마시고, 국회 입법권을 충분히 존중했다라면 이런 논란의 불씨는 애초에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것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김유정 위원** 좀 더 치밀하고, 개정된 법률안을 충분히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최대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두 번째는, 이 부분도 그러면 철회하셨습니까?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중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수를 15% 넘지 않도록 한 부분, 이 부분 철회하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김유정 위원** 아니,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야당에서 분명히 지적했고,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적됐는데 왜 이것은 철회 안 하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는 이것을 변화시킬 경우에 마찬가지로 큰 우려들이 많아서……

○**김유정 위원** 그러니까 바로 장관님의 그런 태도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제차 드리는 겁니다.

본회의의 입법 제안설명을 보면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에 55개의 학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되었지만 이 법 통과로 전국 300여 곳의 자율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입법 제안설명입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지금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법도 필요 없고 입법취지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왜 앞쪽의 심사·선정 시 하자 이유로 지정 철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여론을 반영해서 철회하는 결단과 용기를 보이셔 놓고, 정작 이 개정안의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방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 현장의……

○**김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일방적인 목소리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시행령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그 시행령

에 위임된 사안을 저희가 결정한 것이니까요, 충분히 또 현장 의견 수렴해서……

○**김유정 위원** 지금 자의적으로 15%를 넘지 못하게 한다고 교과부가 정한 이유가 뭐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이 이제 그것을 확대할 경우에는 지금 지나치게 교장 인사 적체가 있는데다가 또 많은 경우에 무리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김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입법 제안설명에,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해서 놓고 자꾸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하시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수렴해서 어떤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일목요연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현장의 의견은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담당자가 설명을 줘……

○**김유정 위원** 아니, 장관께서 잘 모르시는 것을 자꾸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담당 실·국을 통해서 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장관님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지금 교장의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15% 규정을 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김유정 위원** 장관님, 긴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자꾸 변명하실수록 수습이 더 안 됩니다. 교장공모제 시행령은 본래 입법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다시 만들어 주세요. 뭐 하나는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듣고 본질의 마치고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현장의 우려가 많은 사안이기에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보충질의 하세요.

그다음에 임해규 위원님 하시지요.

○**임해규 위원** 저는 절대평가제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우선 중학교하고 전문계고는 12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학년도부터 바로 실시하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전문계 강의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지만 학교 현장에서 준비 상태가 어때요? 가능한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아시다시피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기술·기능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기능의 성취기준은 비교적 단순하고요, 또 원칙적으로 보면 기술·기능이 얼마나 성취되느냐를 절대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해규 위원** 글썄,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선생님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절대평가 형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 우, 미, 양, 가 형식인데 이제 이 표기를 A, B, C, D, E로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보세요? 지금 중학교가 절대평가제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장관님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수, 우, 미, 양, 가 형태고요.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 우, 미, 양, 가로 한다는 게 절대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교과 성취 수준을 정해서 교과 성취수준대로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처럼 상대 9등급이 아니고 교사 분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앞으로 성취기준이나 평가기준을 좀 더 정교화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2학년도부터 한다는 것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간에 하던 것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단 정확하게 수궁되기가 어

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의 경우에도 그간에 하던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서 우선 시범 사업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를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하고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목의 특성이나 또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또 뭐냐 하면 전문계고도 이 점수를 가지고 지금 대학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계고라고 해서 그냥 시범기간이나 또는 충분한 준비기간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준비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볼래요? 괜찮아요, 진짜?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전문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한 15책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200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달까지는 전체 성취기준하고 평가기준을 전문 직능원을 통해서 개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임해규 위원**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좌우지간 이런 전문계 교과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직무연수나 이런 것들은 다 하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예, 지금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이게 학기말 정도에 적용되기 때문에 3월부터 연수해 가지고, 전체 한 1000명 정도 교사 연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교장선생님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걱정되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곧바로 2012, 13학년도에 시범운영을 일반계 교과에서 하게 되고 14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전체 고등학교교육과정을 다 한다는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게 정시의 경우에는 내신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굉장히 아우성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향후 정시 모집에 내신 반영률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수능에 대해서, 지금 수능도 계속 몰수능이라고 비판이 있잖아요. 자꾸 쉽게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변별력 문제가 금방 생겨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그래서 변별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학년도 입시가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격감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대학의 숫자가 부족해서 입시경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시 경쟁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직접적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좋은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니까 입시 경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물론 상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그것은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교육과정을 자꾸 사회적 선발,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는 입시 선발 개념보다는 교육적인 피드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 이것이 갈등을 빚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뜻은 교육적 피드백을 위해서 절대평가를 한다는 게 너무나 좋은 이상이고 매우 좋지만, 사회적 선발을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게 되면 곧바로 불공정 시비가 발생하고 또 선발의 변별력 문제가 금방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번 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저희들이 입학사정관제도라든지 대학에서 학생들 선발할 때 다양한 역량을 보고 하는 제도가 그래도 이 정부 내내 계속 노력을 해서……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벌써 한번 주춤했잖아요,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양적인 팽창은 주춤했지만, 질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제가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하나 도입할 때 그에 따르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취지가 좋은데 실제로 하다 보면 우리가 따르고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육정책을 취하는 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다른 어느 제도보다도 한 2년 반 동안 심의를 거쳐서……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저는 연구는 있는지 모르나 이런 제도는 굉장히 많은 파일럿 실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수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일단 시기를 그냥 ‘12, 13년하고 14년 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와 전문계고에서, 사실상 그것을 시범기간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문계고 교과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범기간을 삼아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시범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인문계 교과 전체에 도입하는 문제는 그것과 연관된 다른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문제라는 게 뭐겠어요? 수능 문제지요. 그리고 내신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야말로 교육계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교육계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 연관된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 점은 우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하려고 하시는데 대해서 좀 뭔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잡고 있는 일정은 굉장히 좀 뭐랄까 빠듯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게 되면 이 자체가 2014년에 할 거면서 지금부터 쓸데없이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사실은 2014년으로 늦춰 잡은 것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범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춰 잡은 것이고 그렇지만 결정을 안 해 놓으면 그런 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니까 결정을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지금 요구드리는 것은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내신과 어떻게 연관을 지으시려고 설계를 했는지 하고요. 그리고 수능과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전문가가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라고 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본적으로 내신의 효용가치를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춘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장의 임용에 대해서 좀 개방화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역량을……

○**김춘진 위원** 원래가 이 법을 만든 의미가 저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에 진출시키자 이런 본래의 취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교장 공모절차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래서 공모절차가 여기에 보면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것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 개방을 하자 이런 뜻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개방도 개방이지만 단순히 임용하는 것을 벗어나서 정말 좋은 분을 공모함으로써……

○**김춘진 위원** 그렇지요. 내부에서 교사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 쓰자 원래 이런 취지인데, 처음에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위축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부분은 그렇게 위축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김춘진 위원** 절대적인 숫자야 그렇지만 오히려 보면 엄청나게 위축이 됐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초빙형에 좀 많이 주안점을 뒀습니다.

○**김춘진 위원** 2007년도 참여정부에서는 내부형이 6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2011년에는 17%지요. 2010년 9월 후반기에는 0.9%에 불과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9월, 3월에 따라서 틀리게 되고요. 숫자를 보면……

○**김춘진 위원** 아니, 틀리다 할지라도 69%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숫자로 보면 뭐 말씀하신 그 연도에……

○**김춘진 위원** 숫자야 전체적인 숫자가 학교에도 초기 단계에서 이런 취지에 의해서 처음에 1차 38개에 일반형이 5개, 초빙형 교장이 12개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초빙형 교장이 몇 개예요, 금년에? 308분이지요, 2011년에? 그리고 2010년에는 벌써 6차, 9차 하게 되면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이 넘는데 여기에 비례해서 후반기 때는 0.9%, 불과 한 48명에 불과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초빙형 중심으로 이렇게……

○**김춘진 위원** 이제 보면 초빙형 중심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에요? 원래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제한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완화하고 또 확대하기 위한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금년에 15%로 제한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것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희들 입법정신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정신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교장공모제 도입은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자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김춘진 위원** 좋은 분을 모시는데 12조5항 보면 기준이 전혀, 15%로 제한하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신청학교에 15% 제한하는 것은 저는 엄

연한 위법이라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유형별로 자격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춘진 위원** 아니,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고 규정을 한번 잘 읽어 보세요. 그리고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련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서 15년 이상인 교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을 신설을 했어요. 신설한 본래 취지하고 이게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제29조의 3 제2항을 신설할 때는 이런 것 제한하라고 신설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고려를 절대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것 완전히 위법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하여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김춘진 위원** 현장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법리 해석을 한번 받아 보세요. 법제처의 법리 해석을 한번 받아서 위법인지 아닌지 좀 보세요. 그리고 법제처에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당장에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내신성적 절대평가에 대해서, 사실 절대평가가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와 같은 현실, 즉 고교의 서열화가 안 된 데서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는 정의사회잖아요. 성적 부풀리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평가하게 되면.

그래서 절대평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대학입시와 고교체제를 바꿔야 돼요.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것 안 하고 이것만 바꾸면 또 다른 특목고…… 지금 고대나 연대나 특목고 학생들 다 뽑잖아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타난 수치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아까 임해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시나 또 고교체제의 변화를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입시제도와 고교체제 변화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선행이 될 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2017년도 되면 그런 제도 변화가 선행이 되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위원** 지금 고교서열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래도 다양화로 해서……

○**김춘진 위원** 서열화라는 게,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을 뽑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지만 최근에는 학력향상도가 우수한 학교들이라든지 해서 전혀 과거와 다르게……

○**김춘진 위원** 전체 숫자를 한번 내십시오.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에 관한 것인데 크리스마스 실이 거의 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내는 돈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거의 다 우편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신 대로 규모를 줄여 나갈 필요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학생 실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최대 61시간에서 한달 100시간 초과근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만 현장실습생들의 현장실습 협약서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봅니다.

○**김춘진 위원** 실태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러면 재학 중인 현장실습학생의 근로기준 시간이 존재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근로기준은 준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런 감독 전혀 안 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저희들이, 저희들이 현장 방문할 때도 고용노동부 국장이랑 같이 갔었고요. 앞으로 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에 관련해서 2011년 한 해 근로실태를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도 필요하고요.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가급적이면 작년 것도 조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주광덕 위원** 연말인데 장관님, 차관님들 애스럽니다.

지금 광주 기아차 실습생이 과로로 인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고 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처음 발표한 것은 이 학생이 최대 58시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실사를 더 해 보니까 최장으로 주 74시간까지 일했던 것까지도 다른 동료 학생들과 근무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주당 74시간이라고 하면 일반 성인도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실 현장실습이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스크린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반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작년에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2015년까지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한 400여 학교만 남기겠다, 물론 이해가 되지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하니까.

290여 개 학교가 이렇게 되면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이런 과정에서 취업률을 좀 향상시키고 취업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가 따랐다 이런 진단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정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의 질이나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학교 숫자를 줄이고 하는 것은 그동안 특성화 고교가 지나치게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예화해서 일단……

○**주광덕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지금 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단위 학교에 뭔가 이런 취업률 목표치를 가지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단위 학교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따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워낙 이제 소위 고졸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발맞추어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취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일환으로 취업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순히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오 마이 뉴스’에 안양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의 인터뷰가 실렸던데 장관께서 혹시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죄송합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분은 이런 말씀이에요. 취업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취업과 관련된 인프라 구

축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학벌중시 현상이 현장에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만 취업에 대한 목표치를 높이라고 던져놓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취업률만을 높이는 책임을 다 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일선 학교 선생님의 인터뷰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이 점 잘 유념하셔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을……

○**주광덕 위원** 대책을 강구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다음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오늘 언론에 대대적인 상세 보도가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3개월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백 회에 걸친 이런 문자나 전화 압력, 또 수습 회에 걸친 실질적인 괴롭힘, 폭력 이런 게 이루어졌더라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피해학생의 부모가 두 분 다 선생님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교사입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서 이게 더더욱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그냥 어려운 여건에서 직장에 다니며 가지고 자녀에 대한 관심을 쓸 시간적 여유조차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전혀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가 아니고 그래도 부모가 선생님이고 또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여건도 어느 정도 되는 가정에서도 이 학생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더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발표한 것은 봤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오늘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내용도 봤지만 그 가해 학생들을 단순히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인격 형성이 덜된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보면 한 3개월에 3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

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 불의의 결정을 하기 전날도 메시지를 보니까 ‘게임 빨리 안 하나?, 야, 대답 안 하나?’ 하면서 뭐 끊임없는 협박……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심한 정말 압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학교교육에 관한 것을 한번 보면 저는 학교 현장에서 경쟁 위주의, 또 학습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의 도리에 대해 가르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두 번째로는 학교 내 폭력에 대해서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숙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다, 또 가해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문제시하지 않는 분위기, 또 우리 법률규정 자체도 이런 학생, 특히 중학생 정도의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데는 법적 대비가 상당히 미약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사실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제도나 우리 사회적, 또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같이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의 왕따나 학교 폭력에 관한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권영진 위원** 서울 노원읍의 권영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선 절대평가 관련해서요, 아마 상대평가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노정이 됐는데 절대평가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습디다,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장관님이 우리 이 정부 거의 임기 마지막인데, 임기 마지막에 입시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또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정부 들어서 입학사정관제를 조금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된 정책 부분들이 두 가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부터 수능, 소위 말하는 물수능이 도입되면서 거기도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여기다가 절대평가까지 도입해 놓으면 이런 거예요. 지금 상대평가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는 학급 내에서 과당경쟁이라든지 그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되지만 지금 절대평가를 해 놓으면 어떤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우려들이 배 고프는 것보다 배 아픈 것을 못 참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절대평가에 물수능까지 가면 결국은 선행 학습 하는 사람들 유리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학별 논술에 변별력을 주기 위한 논술 쪽이 강화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특목고한테 유리한 것이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별 교육 격차를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평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제로 넘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시행은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특성화고는 내년 부터 시행합니다만 일반고 같은 경우는 다음 정부에서 시행되게 됩니다.

○**권영진 위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국민들의 우려, 특히 교육 수요자의 우려가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지만 정책 하나 작은 것 바뀔 때마다 학교 현장,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겪어야 되는 실무적인 부담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이 앞으로는 조금은 세심한 배려의 교육정책으로,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이렇게 바뀔으로써 현장에서 얼마나 우려와 과부하가 걸릴 것인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압니다.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조차도 교장자격증제도를 없애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동안에 교장자격증제도가 계속 유지되어 왔고 지금 자격증 받은 교장들의 한 80% 이상이 대기자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진 위원** 이런 역사를 고려해서 교장공모제에서 자격증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은 현장을 고려하자 이런 취지여서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는 자격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공모제로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자율고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공모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취지로 됐잖아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과부가 15%로 줄였느냐, 30%로 줄였느냐 이 부분들은 법절차에 있는 범위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공모제를 왜 하느냐를 교육 현장의 공급자 사이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교장으로 가게 할 거냐, 일반 교사도 교장으로 가게 할 거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문제예요.

저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정말 학교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는 길을 여는 게 더 큰 의미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두고 있잖아요. 교장추천위원들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발하고 구성하는 것 자체를 보면 학부모들의 다수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냐 하면 저는 거기에 왜곡현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하나는 다수의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15%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앞으로 교장자격증제도를 보완하면서 30%, 50% 이렇게 늘려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말씀 주신 큰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교장공모제도 다른 교육제도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목표를 해서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15%를 어떻게 확대할지 또 그것을 유지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겠

습니다.

○**권영진 위원** 학교운영위 구성과 관련해서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특별히 더 공감을 하고요. 그게 잘 돼야지 사실 공모제가 잘 안착을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교육청마다 사정이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현장을 잘 살펴보십시오. 교장공모제로 공모교장 모신 곳 학부모들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지금 정부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대책을 내세운 것 보면 거의 외형 중심의 역할, 감시 인력을 늘린다든지 CCTV를 늘린다든지, 저는 이것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문제요, 지금 이 문제의 정부대책 나온 것 보면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폭력예방교육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계속 문제 제기한 건데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가 정신건강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검진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은 정권 말기라도 정책을 집중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정신건강검진문제, 인성교육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마련 중이고요. 특히 학생폭력주간 같은 것을 정해서 전국 단위로 정신건강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기 위원님, 본질의 마지막 질의하시지요.

○**徐相箕 委員** 서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

습니다마는 학교폭력 문제, 특히 지난 20일 날 대구에서 중학생이 자살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생들이 학업이나 다른 부담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라든지 고등학생들이 따돌림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는 들었습니다마는 중학교, 지금 2학년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徐相箕 委員** 고학년도 아니고 14살밖에 안 된 학생이 자살한 경우가, 따돌림 때문에,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학생들의 자살 건수로만 보면 140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적인데요. 우선 학부모들 직업이 두 분 다 교사라는데, 그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님들이 교사면 생활수준도 높고 자녀 교육에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점 같은 것도 다른 어떤 학부모보다 더 잘 챙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악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록에 보니까 형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형이 있더라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대구 부교육감과 계십니다.

나와서 좀 답변해 주세요.

○**徐相箕 委員** 가족관계에 형이 있지요? 그것만 하세요.

○**대구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 이걸우** 예, 형이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몇 살쯤 됐어요?

○**대구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 이걸우** 고등학교 1학년 형이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러니까요. 중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의 형제간 같으면, 형이 대학생도 아니고 얼마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옛날 같으면 동생이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조금만 힘에 부쳐도 형이 항상 합심해서 형제간에 같이 힘을 모으고 완력을 모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양친이 다 교사에다가

바로 위에 형도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유서까지 없었다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유서가 없으면 그냥 단순사고로 처리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 같은 경우에 덮으려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만, 계기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순간에도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 받는 학생들이 그야말로 나이 불문하고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장관님, 안 그러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徐相箕 委員**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정책 아무리 잘하셔도 이런 사건 터지고 나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이 다 빛이 바래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언론에 기자회견 한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셔서 가지고 장기적인, 그야말로 초단기·중기·장기·초장기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잊어버리고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텐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내년도 업무를 계획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학교 폭력, 왕따 문제라든지 학생 자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깊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여야 간에 거론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정협의를 하시든지 현안보고 기회를 다시 갖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 필요하다면 다른 부처와, 이것은 그야말로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단기부터 초장기까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처 간의 협조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방안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발표한 평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과부의 교육에 관한 정책이 나오면 항상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여러 가지 반론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만 다른 쪽 이야기도 경청을 하셔서 가지고 어떻게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한 가지 이것은 지금 당장 즉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맞춤형복지니, 뭔가 공격할 때도 무슨 써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라고 하나요? 딱 짚어서 하듯이 이런 것을 전 과목, 전 학년에 다 할 게 아니고 과목이나 학년에 따라서 평가제도를 융통성 있게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사실 절대성취기준을 가지고 하면서도 평균하고 표준편차, 원점수를 다 병기하도록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徐相箕 委員**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학년이나 과목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융통성 있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고 전문교과들은 먼저 하고 일반교과는 순차적으로 하는……

○**徐相箕 委員** 그런 것만 하더라도 그런 취지하고 맞는 거니까요. 그것을 이제는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기 좋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정보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 있게 생각해 봐 주시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계속 검토해 보겠

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 장관님 지금 서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 자살,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춘진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내년도에 당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800명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또 교사 분들의, 특히 담임교사 분들의 상담 기능에 관련된 연수도 좀 많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리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동들한테 제대로 해 주려면 제대로 교육받고 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법에 의료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의사 분들이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춘진 위원 아니, 의사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사가 어떻게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그래서 심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서 곳곳에, 거점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거기에서 무궁무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근대적인 1950년대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의료법을 바꿔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보건 의료 쪽에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적극적으로 각료회의에서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원자력발전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울진원전에 대해서, 처음에 이것이 마모가 돼서 그렇다…… 원자로가 지금 몇 개나 가동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원자력 안전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지금……

○김춘진 위원 이관이 됐는데, 과학에 대해서는 현재 소속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기능 중입니다.

○김춘진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지금 원자력에 관한 연구소라든가 원자력연구원이 교과부 산하에 있지요? 지금 출연연이 개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원자력연구원은 교과부 산하기관입니다.

○김춘진 위원 교과부 산하기관이지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 있다고 해서 장관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원자력발전소는 지경부 문제고요.

○김춘진 위원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고요.

○김춘진 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울진원전이라든가 고리원전이라든가 지금 보면 마모가 되어 있다, 크랙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수천 군데 가 있지요? 1호기에서부터 안전하게…… 크랙이 얼마나 가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고리원전이나 울진원전이나. 그래서 장관님께서 전체 원전에 대해서 균열이 얼마나 가 있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그런 것은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파악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봐요.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도 크랙이 가 있는, 크랙이 제일 문제거든요. 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비금속개재물이 들어가 있어요. 주조를 할 때라든가 또 두들겨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주조하는 (casting)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레이디에이션 빔이나 여러

가지 역학에 의해서 코어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균열이 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안전에 대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국정감사 때 매년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원전의 문제점, 균열이 얼마나 가 있고 이런 율을 조사한 것이 다 있을 것이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각료 회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이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춘진 위원** 또 차관회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른 부처의 문제까지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을 때 각료회의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부처 것만 하려면 뭐 때문에 각료회의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김춘진 위원** 뭐 때문에 또 차관회의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리고 다른 모든 분야를 이쪽 분야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요. 보는 시각이, 각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을, 외교에서부터 국방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진 위원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그렇게 터지고 있는데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직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안 해 가지고, 현재 소관이 아마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일단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니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접근이 안 돼서 여야 원내대표들한테 빨리 정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황우여 대표께서도 한미 FTA만 처리되면 빨리 해 준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해주셨는데. 지금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도 있고 또 서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생 자살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끝없는 경쟁 속에 아이들을 몰아넣어야 되는 것인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맨날 인성 교육한다고 그러면서 하고 계신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제대로 접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면 시·도 교육감을 전부 국회로 불러서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도 해결된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朴英娥 委員** 서면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보환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춘진 위원님, 박영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으로부터도 서면질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호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될 법안하고 지난번에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시킨 법안하고 국정결과보고서 채택 문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증인의 고발 문제 등에 대해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권영진	김상희	김선동	김세연
김영진	김유정	김춘진	박보환
박영아	배은희	변재일	서상기
안민석	유성엽	이상민	임해규
주광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용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제1차관	설동근
제2차관	김창경
기획조정실장	이성희
연구개발정책실장	조울래
인재정책실장	이상진
대학지원실장	김응권
학교교육지원본부장	김종관
대변인	이근재
감사관	박준모
정책기획관	고경모
국제협력관	서유미
기초연구정책관	양성광
전략기술개발관	최중배
과학기술인재관	이진석
미래인재정책관	성삼제
창의인재정책관	이진규
평생직업교육관	김영철
대학선진화관	구자문
대학지원관	송기동
산학협력관	최은욱
학교지원국장	김관복
교육복지국장	고영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장	윤대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제1상임위원	김차동
제2상임위원	김화동
사무처장	이창한
과학기술정책국장	장진규
연구개발조정국장	류용섭
성과관리국장	박구선
기획관리관	조성찬
심의관	홍재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결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27 김춘진·조배숙·이낙연·유성엽·김성곤·김상희·김영록·김영진·최규식·오제세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27 박민식·권영진·김성태·김성희·김세연·김재경·박진·윤석용·이상권·이화수·정태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8일 회부됨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

(2011. 11. 1 정부 제출)
11월 2일 회부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2011. 11. 3 조영택·이용섭·강성종·김재균·강기정·김동철·박주선·강창일·이낙연·장병완·이석현·유선호 의원 발의)
11월 4일 회부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1. 11. 4 서상기·정두언·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원희목·이종혁·배은희·권영진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11. 4 서상기·정두언·조전혁·이종혁·배은희·김세연·박보환·권영진·김선동·김무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7일 회부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

(2011. 11. 10 전현희·박은수·김을동·박기춘·이춘석·백원우·강기정·김효석·정범구·송훈석 의원 발의)
11월 11일 회부됨

영유아교육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0 이상민·김창수·임영호·이진삼·이명수·류근찬·권선택·김용구·이재선·유성엽·강기갑 의원 발의)
11월 16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1 이재오·강승규·권택기·박상은·손숙미·신상진·안경률·안상수·원희목·

이춘식·임동규·장제원·진영·조문환·
진수희·허천 의원 발의)

11월 14일 회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권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7 이상권·박민식·김태호·조경태·
김재균·유재중·유일호·김광림·김세연·
이화수·이정선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
표발의)

(2011. 11. 17 안민석·유성엽·김재윤·권영길·
강기정·김영진·김유정·변재일·최영희·
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회부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1. 18 정부 제출)

11월 21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 조경태·김우남·정영희·유선호·
전현희·김재윤·김재균·조정식·백재현·
강창일·조배숙 의원 발의)

12월 5일 회부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6 정부 제출)

12월 7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1. 12. 7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8일 회부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9 김우남·윤석용·이낙연·유선호·
조경태·강기정·김영록·유성엽·전병헌·
최종원·김상희·이사철·조배숙 의원 발의)

진로체험교육진흥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1. 12. 9 김춘진·김영진·김영록·이석현·
오제세·김성곤·신낙균·원희목·이용경·
안민석·유성엽·이윤석·김학용 의원 발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9 박은수·주승용·강창일·최영희·

백원우·조영택·이미경·전현희·김부겸·
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2일 회부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0 유성엽·황영철·김춘진·김용구·
김성수·김효석·권영길·강기갑·신건·
오제세·김상희 의원 발의)

12월 21일 회부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1 서상기·정두언·이종혁·원희목·
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권영진·
임해규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1 서상기·정두언·이종혁·원희목·
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권영진·
임해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중증장애인가족 생활에 대한 지원법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6 이정선·김태원·강성천·허천·
박대해·윤석용·김성곤·김소남·유성엽·
원희목 의원 발의)

10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11. 11. 9 허원제·강승규·김선동·김성동·
김을동·김재윤·김정훈·김창수·박은수·
심재철·안형환·이경재·이병석·이철우·
정병국·정장선·조배숙·조윤선·조진형·
진성호·진수희·한선교·홍사덕·이미경 의원
발의)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

(2011. 11. 10 정부 제출)

11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